4. 재무제표 주석 · 주기

가.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의 개요

(1)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이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 의거 의정부시가 재단법인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제2190호)를 제정하여 경기도의 설립 인가를 받아 2007년 5월 21일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주요회계처리방법

법인의 주요 회계 처리방법은 재단회계 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중요한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승인 및 결산보고

법인은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정부시장에게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으며, 결산은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의정부시장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 기타투자자산

기타투자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시의 자본예산에 의한 취득이므로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의 계정으로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 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있으며, 당해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대행사업비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가상각비를 5년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 상각한 금액을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산하여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수탁자산

법인은 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의정부예술의전당을 유지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 시설의 수선과 시설개량을 재단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시설은 자치단체의 소유이므로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으며, 예산편성시 수탁자산의 취득, 개량, 수선에 소요되는 자본예산을 구분편성하고, 수탁자산의 취득에 따른 지원자금의 수입도 대행사업수입과 구분하여 수탁자산취득보조금(수탁자산 차감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사업비와 수탁자산 취득 및 시설개량비를 명확히 구분되도록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결산시 수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재단의 재산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수탁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5) 영 업 수 익(고유목적사업이익)

영업수익은 의정부시 재단법인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제2190호) 제9조(운영재원 등)에 의하여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의정부시장이 부담하는 대행사업 비용을 수익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과 대행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정산반환금으로 반납하거나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로부터 수령하는 상기의 대행사업수익을 제외한 국,도등의 외부 지원금은 외부지원금의 계정으로 영업수익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6) 영업외수익(고유목적사업외수익)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 수입임대료, 잡이익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이외의 수입을 의미합니다.

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인것을 의미합니다.

라. 미수금

미수금은 2013년 수입금액이나 행사단체나 기타 사유로 미입금되어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 유형자산 및 수탁자산

유형자산은 의정부시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예술의전당 잔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외에 법인설립시 공단으로 전출받은 자산은 전액 상각이 완료되었으며, 상각완료된 자산의 내역은 제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없이 자체 취득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여는 당해자산의 매입가액에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며, 당해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하고, 5년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 으로 감가상각한 금액을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의하여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의정부시의 수탁자산으로 수탁자산의 취득, 개량, 수선에 소요되는 자본예산을 구분편성하고, 수탁자산의 취득에 따른 지원자금의 수입도 대행사업수입과 구분하여 수탁자산취득보조금(수탁자산 차감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사업비와 수탁자산 취득 및 시설개량비를 명확히 구분되도록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결산시 수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재단의 재산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수탁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바.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2014년 연말까지 원인행위 된 사업으로 익년도까지 초까지 진행되며, 사업완료 후 거래처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사. 선수금

선수금은 2015년에 사용예정된 외부지원금으로 2014년 연말에 입금된 금액입니다.

아. 선수수익

2014년도에 입금되었으나 미정산등의 이유로 미계상된 수익으로 2015년도에 수익계상한 금액입

자. 예수금

사업예산에서 기지출되고 출납폐쇄 기간내에 지급완료되는 사업예산에 속하지 않는
예수금입니다.

차. 정산반환금

당해년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과 고유목적사업수익, 사업외비용을 제외한 사업외수익의
금액으로 정산반환하여 다음년도 사업예산에 편성 됩니다.

카.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매년 운영관리기관에 위탁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타. 외부지원금사업비

외부지원사업비는 사업예산에 속하지 않는 특별지원경비로서 지원금신청에 따라 사업별로
지원되는 경비성 지원금으로 사업진행후 해당 부처에 정산보고 합니다.